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2
----------	------

제출일자: 2015. 11. 10.  
제 출 자: 광진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 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 배출시 종량제 봉투의 규격별 무게 상한을 정하여 수거 작업을 원활히 하고자 함.
- 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이 규정되지 않아 조례에 규정이 필요하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 추가 및 금액을 정비.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전환되어, 같은 법을 인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감면자 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대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추가 예산확보 없이 감면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지급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종량제 봉투 무게상한을 신설(안 제8조제2항 및 별표 6 신설)
- 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
- 다.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항목 추가·보완(안 별표 1)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감면자 지급대상 정비(안 제29조제1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5. 10. 16. ~ 11. 5.)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②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봉투 규격별 무게상한을 별표 6에 따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를 “, 방문신청 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별표 1을 다음의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다음의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4호부터 제18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6호 및 제2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품 목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규 격	부과금액
DVD,비디오(VTR)		면제	고무통	지름 100cm 이상	5,000
TV	42인치 이상	7,000		지름 50cm 이상	4,000
	25인치 이상	5,000		지름 50cm 미만	3,000
	25인치 미만	3,000	공기청정기	가장 긴면 1m 미만	면제
TV받침	3,000	가장 긴면 1m 이상		4,000	
		영업용		15,000	
가방류	골프채 가방	3,000	교자상 밥상	4인 이상	2,000
	길이 50cm 이상 (캐리어 등)	2,000		4인 미만	1,000
	길이 50cm 미만	1,000		차식탁(다과상)	1,000
가스레인지		면제	금고	가장 긴면 1m 미만	7,000
가스오븐 레인지	높이 1m 이상	5,000		가장 긴면 1m 이상	10,000
			면제	기름탱크	400L 미만
가습기		면제	400L 이상		7,000
간판	40cmX100cm 당	4,000	김치냉장고	130L 이상	5,000
	가장 긴면 1m 이상	2,000		130L 미만	3,000
	가장 긴면 1m 미만	1,000	난로	전기	면제
	고무통 입간판	5,000		벽걸이	면제
거실장 (유리별도)	길이 120cm 미만	4,000	냉장고	가스	2,000
	길이 120cm 이상	6,000		석유	2,000
	길이 180cm 이상	10,000		영업용 (대형)	20,000
				500L 이상	10,000
거울	가장 긴면 50cm 미만	1,000	노트북		면제
	가장 긴면 50cm 이상	2,000	녹즙기		면제
빨래건조대 (신규)	길이 1m 이상	2,000	다리미		면제
	길이 1m 미만	1,000	다리미판		1,000
게시판 화이트보드	가장 긴면 1m 이상	2,000	도마	가정용 나무도마	1,000
	가장 긴면 1m 미만	1,000		업소용 나무도마	2,000
게임기 오락기	전문 업소용	12,000	뒹자리(대자리, 놀이매트)	1m <sup>2</sup> 당	1,000
	50cm 미만(가정용)	면제	렌지대 수납장		4,000
	50cm 이상(기타)	3,000		마네킹	1m 이상
			1m 미만		3,000

품 목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규 격	부과금액
모뎀		면제	세면대		3,000
목욕탕수건함		1,000	쇼파 (안락의자)	4인용	13,000
목재	5kg당	1,000		3인용	10,000
문갑		3,000		2인용	7,000
문짝		3,000		1인용	4,000
				스툴	3,000
물탱크	1톤당	6,000	수도호스	10m 당	1,000
	0.5톤 이상	4,000	스탠드옷걸이 (캣타워)		3,000
	0.5톤 미만	3,000	스캐너		면제
믹서기		면제	스키	스키	3,000
바둑판	두께 12mm	1,000		스키부츠	2,000
	두께 60mm 이상	2,000			
발마사지기계		4,000	식기건조기	높이 1m 이상	5,000
방석	겨울용	1,000		높이 1m 미만	면제
	여름용	500	식기세척기	높이 1m 이상	5,000
배기후드		2,000		높이 1m 미만	면제
베개 (라텍스베개)		1,000	식탁(나무) (의자별도)	6인 이상	5,000
벽시계	길이 1m 이상 지름 28cm 이상	2,000		4인 이상	4,000
	길이 1m 미만 지름 28cm 미만	1,000		3인 이하	3,000
변기	양변기	5,000	식탁(대리석) (의자별도)	6인 이상	10,000
	좌변기	3,000		4인 이상	7,000
병풍	2폭당	1,000	신발	부츠,장화,인라인	1,000
보일러	16kcal/h 이상	12,000	신발장	높이 1.5m 이상	4,000
	16kcal/h 미만	10,000		높이 1.5m 미만	2,000
보행기		2,000	싱크대	개당	3,000
복사기 (영업용프린터)	높이 1m 이상	10,000	쌀통		3,000
	높이 1m 미만	5,000	쓰레기통	가정용	1,000
블라인드	1m <sup>2</sup> 당	1,000		사무실 옥외용	2,000
비닐옷장 (비키니옷장)		3,000	아이스박스	50L 이상	3,000
비데		1,000		30L 이상	2,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30L 미만	1,000
	4단 이하	3,000	안마기		2,000
선풍기	업소용(스탠드형)	3,000	안마의자		10,000
	가정용	면제	액자	가장 긴면 50cm 미만	1,000
세단기	높이 1m 이상	4,000		가장 긴면 50cm 이상	2,000
세탁기	10kg 이상	4,000		가장 긴면 100cm 초과	3,000
	10kg 이하	3,000	온수기		2,000

품 목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규 격	부과금액
어항	영업용, 2m 이상	15,000	자동판매기	음료 담배	15,000
	가장 긴면 1m 이상	5,000		자가 소형	3,000
	가장 긴면 1m 미만	3,000	자전거	성인용	4,000
에어컨	264m <sup>2</sup> 이상	8,000		아동용 2륜	3,000
	66m <sup>2</sup> 이상	5,000		아동용 3륜	2,000
	66m <sup>2</sup> 미만	3,000	장난감	길이 50cm 이상	2,000
에어컨 실외기	1m 이상	10,000		길이 50cm 미만	1,000
	1m 미만	면제	장롱	120cm 이상	15,000
오디오	본체 1m 이상	4,000		90cm 이상	10,000
	본체 1m 미만	면제		90cm 미만	7,000
	스피커 1m 이상	1,000	장식장	높이 120cm 미만	4,000
	스피커 1m 미만	면제		높이 120cm 이상	6,000
오르간	전자식	5,000		높이 180cm 이상	10,000
	일반 오르간	10,000		오디오용	3,000
온풍기	264m <sup>2</sup> 이상	8,000	장판	3.3m <sup>2</sup> 당	2,000
	66m <sup>2</sup> 이상	5,000		전기장판 (1인용)	2,000
	66m <sup>2</sup> 미만	3,000		전기장판 (2인용)	3,000
		옥 자석 온수 등 1인용		4,000	
				옥 자석 온수 등 2인용	7,000
욕조	일반용	5,000	재봉틀	(재봉틀대)	2,000
	유아용	3,000	전기담요	1인용	1,000
우산	일반용	1,000		2인용	2,000
	어린이용	면제	전기밥솥	(보온밥솥)	면제
유리	0.5m <sup>2</sup> 당	1,000	전기판넬	3.3m <sup>2</sup> 당	2,000
유모차	1인용	2,000			
	2인용	4,000	전자레인지		면제
유아용 보행기		1,000	전화기, 휴대폰		면제
유아용 자동차		2,000	정수기	높이 1m 이상	4,000
의자	1인용	2,000		높이 1m 미만	면제
	장의자	4,000	조명기구 (모든 규격)	폭, 높이 1m 이상	2,000
	바퀴 대형	4,000		폭, 높이 1m 미만	1,000
	바퀴 소형	3,000		상드레아	2,000
이불	겨울용	2,000	진열대	1m <sup>2</sup> 당	3,000
	여름용	1,000	책꽂이	4단 이하	2,000
인형		1,000		2단 이하	1,000

품 목	규 격	부과금액	품 목	규 격	부과금액
찬장	폭 130cm 이상	10,000	탁자	협탁	2,000
	폭 120cm 이상	7,000		2인용	3,000
	폭 90cm 이상	5,000		응접용	3,000
				10인용 미만	6,000
폭 90cm 미만	3,000	10인용 이상		8,000	
창문		2,000	탈수기	가정용	면제
			라켓	테니스 라켓	1,000
책상 (유리별도)	서랍없음	3,000		배드민턴 라켓	500
	편수	5,000	텐트	4인용 미만	3,000
	양수	7,000		4인용 이상	4,000
	컴퓨터책상	3,000	토스터기		면제
책장	90cm X 180cm 이상	8,000	캐비닛 (파일)	90cm×180cm	4,000
	90cm X 180cm 미만	4,000		4단 이상	3,000
	4단 이하	2,000		3단 이하	2,000
천막	길이 6m 미만	5,000	파티션	1m <sup>2</sup> 당	2,000
	길이 6m 이상	7,000	팩시밀리		면제
청소기	영업용	4,000	팬히터	벽걸이형	2,000
	가정용	면제	프린터(복합기)	가정용	면제
침대	1인용 매트리스	5,000	피아노	일반	15,000
	2인용 매트리스	8,000		디지털	5,000
	1인용 침대틀	5,000	항아리	높이 50cm 이상	3,000
	2인용 침대틀	7,000		높이 50cm 미만	2,000
	유아용	3,000	행거	1단 행거	2,000
	어린이 2층	15,000		2단 행거	3,000
	1인용 돌, 옥, 황토	20,000	헤어드라이어		면제
	2인용 돌, 옥, 황토	30,000	헬스기구	런닝머신	15,000
카세트라디오	면제	헬스자전거		7,000	
카시트	2,000	스텝퍼		4,000	
카페트	3.3m <sup>2</sup> 당	2,000	화분	지름 50cm 미만	1,000
				지름 50cm 이상	2,000
커튼	2m 미만	1,000	화장대		3,000
	2m 이상	2,000	화장품대 (경대)		1,000
커튼봉		1,000	화환		3,000
커피포트		면제	환풍기	가정용	면제
컬러박스 (공간박스)	2단 미만	1,000		업소용 (대형)	3,000
	3단 이상	2,000	환풍기		면제
컴퓨터		면제	휴대폰충전기		면제
킥보드		2,000	라지에타		4,000
탁구대		7,000	※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의한다.		
타이어	지름 1,100mm 이상	5,000			
	지름 600mm 이상	5,000			
	지름 600mm 미만	3,000			

[별표 6]

**50ℓ 이상 종량제 봉투 무게상한**  
(제8조제2항 관련)

용 도	규 격	무게상한
종량제 봉투 (사업장생활계 포함)	50ℓ	13kg
	75ℓ	19kg
	100ℓ	25kg

\* 폐기물 배출 밀도 0.25kg/ℓ 이하

[별지19]

<b>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방문)</b>				처리기한
				즉 시
* 굵은 선안 *표에 기재(신청인)		접수번호		
* 성 명		* 상 호		
* 연 락 처		* 주 소		
배출내역	* 폐기물명	* 규 격	* 수 량	수 수 료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원
* 배출 예정일	년 월 일 시			
* 배출 장소				
수수료인증란	[안내] ※ 신고하신 품목(크기)과 실제 품목(크기)가 다르면 수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b></p> <p>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또는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p> <p>③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b></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 (방문, 인터넷 등) 하여야 하며 <u>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u></p> <p><b>제29조(수수료 감면)</b>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u></p>	<p><b>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봉투 규격별 무게상한을 별표 6에 따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b>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대형폐기물 : ----- ----- -----, 방문 <u>신청 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u></p> <p><b>제29조(수수료 감면)</b> ① -----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p>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종량제 규격봉투의 예산편성 근거규정과 생활폐기물 배출 무게 상한제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서식 규정, 대형폐기물 품목 추가 및 금액을 정비하는 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감면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지급 하고 폐기물 수거를 원활히 하는 안으로 이로 인해 특별한 비용 발생사항은 없으므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4. 작성자

- 청소과 행정7급 이충주

청소과장 이 상 욱